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p> <p>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의거 동의한다.</p> <p>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규약안</p> <p>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자치복권 발행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p> <p>제 3 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의 2번지 소재 사단법인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둔다.</p> <p>제 4 조(구성)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 구성한다.</p> <p>제 5 조(조직)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감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②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에 위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임기장을 승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p>	<p>직무를 대행한다.</p> <p>⑤감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계처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공제회에 위탁한 사무의 처리상황을 감사한다.</p> <p>⑥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계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직원을 둈다.</p> <p>제 6 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관리담당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p> <p>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관리담당관으로 한다.</p> <p>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제 7 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권발행관련사무의 대행기관선정 및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등에 관한 사항 3.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사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 <p>②협의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실무협의회에 위임하거나,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제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 8 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p> <p>③실무협의회는 회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p> <p>④내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p>
--	---

<p>⑤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개최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실무위원장은 협의 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견과 협의 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협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9 조(협의방법등)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합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감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제10조(미합의사항 조정등) ①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의회의 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 ①전국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지방자치 단체별 배분은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익금을 배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 시군구 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행사기념복권을 당해행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판매수익금의 배분은 발행관련 지방자치 단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p> <p>제12조(사무처리등)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관계공무원의 참석 및 의견개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p>	<p>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3조(재무회계등)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p> <p>②회장은 회계사무처리와 전국자치복권발행 사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계사무처리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제15조(보칙) 이 규약에 규정된 사항이 외에 협의회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p>
--	---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95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에 賛成하시는 議員님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原案에 賛成하시는 議員입니다.

(起立 表決)

着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反對하시는 議員님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74名 中 賛成 54名, 反對 6名,棄權 14名으로, 議事日程 第14項 '95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